



원 주 시

특별자치 강원,
경제도시 원주!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24년도 의료기관 아동학대·긴급복지지원·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자
살예방교육 안내

1. 근거(관련법)

- 가.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
- 나.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
- 다.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
- 라.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, 시행령 제10조제2항

2. 위 법령에 근거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.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각 의료기관에서는 교육을 이수하여 그 결과를 **2024. 12. 1.까지** 보건소 의약팀으로 **팩스** 또는 **이메일**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교육이수 결과 제출처

구분	담당자 전화번호	담당자 이메일주소	보건소 팩스번호
병원, 일반의원	033-737-4022	ishtar02@korea.kr	033-737-4826
치과병원, 치과의원	033-737-2070	kms23@korea.kr	
한방병원, 한의원	033-737-4003	rys03209@korea.kr	

□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

구분	교육대상	교육사이트
아동학대 신고의무자	의료기관의 장, **의료인, ***의료기사	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 센터(http://edu.ncrc.or.kr/)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수강 시 자동으로 실적등록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		-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누리집(www.naapd.or.kr) - 나라배움터(e-learning.nhi.go.kr) - 경기평생학습포털(www.gseek.kr) - 서울시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 * (한의협)보수교육과정 이러닝센터에서 이수자는 교육 결과 제출 불요

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	의료기관의 장,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 (면허종별 무관)	한국보건복지인재원(in.kohi.or.kr) -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- * 세 가지 교육 모두 수강 가능: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사이트(<https://www.gseek.kr>)
- * 그 외 추가 교육사이트, 강의자료는 개별 안내문에서 확인

**** 의료인:** 의사, 치과 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조산사
***** 의료기사:**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사, 치과위생사

□ 예방교육 대상

구분	교육대상	교육사이트
자살예방교육 의무교육	병원급 의료기관의 장, 병원급 의료기관 모든 종사자	자살예방교육(https://edu.kfsp.or.kr/) -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생명지킴이교육(의사용) -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생명지킴이교육(간호사용) - 보건복지 종사자 대상 기본편 교육

- 붙임 1. (아동학대/긴급복지지원/자살예방)교육 안내문 각 1부
2. (아동학대/긴급복지지원(안내문에 포함)/장애인학대)교육 결과보고서 각 1부
※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는 자살예방교육사이트 <https://edu.kfsp.or.kr>에 직접 입력

※ 붙임자료는 원주시보건소 홈페이지-[건강정보]-[정보마당]-473번 게시. 끝.

원 주 시 장

수신자 원주시의사회장 귀하, 원주시치과 의사사회장 귀하, 원주시한의사회장 귀하,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32개소
귀하,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466개소 귀하,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,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
원장

주무관 **임선영** 의약팀장 **신동미** 보건행정과장 **백승희** 전결 2024. 9. 4.

협조자

시행 보건행정과-22615 접수

우 2641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139, 원주시보건소 / <http://www.wonju.go.kr>

전화번호 033-737-4022 팩스번호 033-737-4826 / ishtar02@korea.kr / 비공개(6)

개인정보 보호로 안전한 직장을 함께 만들어가요